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 공업을 중심으로

전현수(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 역사학)

I. 머리말

1946년 8~10월 북한에서는 일제 소유의 산업기관들이 국유화되어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창설되고 이에 기초하여 1947년 이후 일체의 공업활동이 유일한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원칙의 도입은 북한 사회주의 형성의 역사적 전제조건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에 따른 남북분단의 조건에서 남북한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발전의 길-자본주의적 길과 사회주의적 길로 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는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혁명을 이해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해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점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매우 높은 현실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진전시킬만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다. 일부 논문들에서 이 주제가 간혹 검토되기도 하였지만 내용적으로 언급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이처럼 본고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던 것은 사료적 여건이 열악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연구자들의 관심이 경제문제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정치사에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산업국유화와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 실시된 '민주개혁'을 전반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혹은 공업에 대한 통사적 서술에서 이 문제는 예외 없이 검토되었다. 1985년에는 산업국유화에 대한 최초의 독립적인 저서도 간행되었다.¹⁾

북한의 연구자들은 해방 직후 북한의 공업 부문에서 전개된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제국주의적 착취와 예속의 경제적 기반을 청산하고 나라의 중요 생산수단을 민족경제의 자주적인 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지향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인민경제에서 국가적 부문의 지도적 지위를 보장하여 계획적 기초 위에서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공장·기업소의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연구성과들은 선행연구를 대표하고 있지만 산업국유화와 인민경

1)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인민경제의 발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4);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평양: 국립출판사, 1958);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해방 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박영근, 『우리나라에서의 공업관리조직형태의 개선강화』 (평양: 1961); 손전후, 『산업국유화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세계화의 역사적 실체를 해명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연구성과들은 광범한 사료적 원천에 입각한 엄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지 못하고 김일성의 '로작'을 해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손전후의 저서는 산업국유화에 대한 최초의 독립적 연구로서 매우 뛰어난 실증분석에 기초해 있지만 방법론과 문제의식은 선행 연구자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북한의 연구성과들은 해방 직후 북한의 경제가 '북조선인민정권'의 자주적인 경제정책에 의해 아무런 모순 없이 발전해 갔다는 시각에 의거해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소군정의 공업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소련군 없는 북한사회의 자주적 발전이라는 '주체적 역사 인식'은 역사적 사실조차 정당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군정 통치의 조건에서 전개된 사회혁명의 모순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한다.

손전후의 연구가 바로 이러한 제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손전후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에 의해 북조선 행정10국이 공장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공장·기업소들이 통일적으로 장악되고, 이에 대한 점유·처분권은 물론 소유권이 확립되어 사실상 국가적 소유가 확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산업국유화는 이 소유권의 성격을 법적으로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²⁾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이하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1946년 8월 소련정부가 일제 소유의 주요 산업기관들을 조선 인민의 소유로 이관하기까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제 소유의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완전한 점유·처분·소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상당수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은 소련군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하에 놓여 있었다.

본고는 소군정 통치의 조건에서 해방 직후 북한의 공업 부문에서 전개된

2) 손전후, 위의 책, 54쪽.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킬 목적에서 준비된 것이다. 본고는 북한 공업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 출발하여 공업관리기구의 형성과정과 공업의 복구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군정의 공업정책에 주목하면서 산업국유화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들을 분석하고 인민경제계획의 기본방향과 실행과정 및 결과들을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법으로 북한사회 발전의 내적인 동인만이 아니라 외적인 동인, 즉 소련의 대북한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제기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미군노획문서'와 러시아자료를 주요한 사료적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소련 각료회의·국방성·외무성·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논지전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본고는 연구사적 정황을 고려하여 새로 발굴된 러시아자료를 가능한 한 풍부히 구사하여 사실인식의 토대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II. 해방 직후 북한의 공업

1910년 강점 이후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을 자신의 원료기지와 상품 판매시장으로 활용하였다. 조선의 풍부한 원료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은 일본자본이 침투하기 좋은 조건이 되었으며, 일본 자본가들은 조선의 천연자원을 약탈하고 조선인민을 수탈할 목적으로 공장, 광산, 탄광,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1937년 이전에는 조선은 중심부에 농업원료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본의 농업 부속물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만주점령 이후 일제는 조선을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일제는 조선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전력을 활용하여 일제의 군사적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공업부문을 건설하였다. 조선은 일본의 군수공업에 강철, 주철, 유색금속, 화학제품 등 중요한 전략적 물자를 공급해 주었다.

일제통치의 마지막 10년간 조선의 공업은 급격히 발전하였다. 거의 모든 중요 기업소들이 1940~45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공업투자액은 1940년에 28억 엔에서 1944년에는 34억 엔으로 성장하였다. 공업총생산액은 1941년에 37억 엔에서 1944년에는 45억 엔으로 성장하였다.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42년에 200만 명에서 1944년에는 500~60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인민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특히 중공업·군수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대되었다.³⁾

이러한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공업은 전체적으로 식민지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규모가 큰 거의 모든 기업소들은 일본인들이 소유하였고 조선인 기업가들에게는 소규모 기업소들만이 속하였다. 1944년 공업투자액 34억 엔 가운데 조선인 소유 회사의 투자액은 3억 엔(8.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1억 엔(91.2%)은 일본인 소유 회사의 투자액을 이루었다.⁴⁾

조선의 공업은 일면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조선의 공업은 일본 공업에 완전히 종속되어 일본 경제의 부속물로 되었고 자주적인 발전이 불가능하였다. 조선에서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원료나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들, 즉 광공업·석탄공업·흑색·유색금속공업·화학공업·건재공업이 발달하였다.

일본인들은 대부분의 기업소들을 그 생산공정이 비완결적인 형태로 건

3)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102, 목록 1, 문서함 1, 문서철 10, 218쪽.

4)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102, 목록 1, 문서함 1, 문서철 10, 219쪽.

설하였다. 최종적인 가공을 위해 기업소들의 제품은 일본의 공장들로 보내져야 했다. 생산의 처음과 마지막 공정 사이에, 각 공업부문 내부에 커다란 불균형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1944년 흑색금속공업의 제품 생산 구성은 선철이 481,171톤, 강철이 145,543톤, 압연제품이 107,360톤을 이루었다.⁵⁾

조선에서 공작기계, 공장·제조소 설비, 공업 부품의 생산 등 기계제작공업의 발달이 매우 저조하였다. 남한에 위치한 몇몇 기계제작공장들은 공업 부품들에 대한 수요의 보잘 것 없는 부분만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공업 설비와 부품들은 필요에 따라 극히 제한된 수량만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입되었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공업총생산액에서 기계제작공업이 점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조선경제의 식민지적 성격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1944년 북한에서 기계제작공업이 공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1939년에 이미 22.5%에 달하였다. 일본의 기계제작공업이 공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선의 10배 이상에 달하였다.⁶⁾

경공업도 조선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하였지만 발전 정도가 미약하여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제품들만을 생산하였으며, 제품의 종류면에서나 질적·양적 측면에서나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생필품의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다.

조선에서는 흥남화학공장이나 수풍수력발전소와 같이 일부 현대적인 대기업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가의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여 낙후된 기술과 시대에 뒤떨어진 시설을 갖춘 소기업소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제지공업과 식료공업부문의 기업소들에는 일본에서 이미 기한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된 뒤 조선으로 이전된 오래된 공작기계들과 집합기계들이 설치되

5)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함 4, 문서철 11, 75쪽.

6)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4~5쪽.

었다. 기업소들의 안전설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이에 따라 산업 재해가 빈발하였다.

조선 공업에서는 일체의 간부직과 거의 모든 기사·기술직을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기업소 지배인, 기사장, 기사, 공장장, 숙련직공, 숙련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조선인 전문가들은 공업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민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수적으로도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2차적인 직위만을 차지하였다.⁷⁾

일제 패망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분할되자 북한에는 조선 공업의 4분의 3 이상이 집중되게 되었다. 북한의 공업총생산액은 전체 공업총생산액의 70%에 달하였다. 북한에서는 특히 흑색·유색금속공업, 화학공업, 광공업이 발달하였다. 북한에는 전력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거대한 수력발전소들도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계제작공업의 발달은 매우 저조하였다. 북한에는 경공업과 식료공업도 일부 존재하였지만 남한의 원료원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⁸⁾

일제 패망 당시 북한에는 모두 1,034개의 경제적 의미를 지닌 기업소들이 존재하였다. 이 기업소들의 설비·시설은 매우 낡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 시기 보수작업 없이 무리하게 가동하여 마모율이 50~60%에 이르렀다. 부품과 보조장비의 채고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19개의 수력발전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업소들이 조업을 중단하였다.

일제 패망시 많은 기업소들이 파괴되거나 침수되거나 파손되었다. 일본인들은 64개의 탄광·광산을 침몰시켰으며, 6개의 기업소를 완파하였다. 178개의 탄광·광산은 부분적으로 침수되거나 파괴되었다. 47개의 기업소에서는 대규모의 분공장과 집합기계가 망가졌다. 전체의 25%에 달하는 53

7)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32~34쪽.

8)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6~7쪽; 러시아국 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178~179쪽.

개의 기업소와 242개의 탄광·광산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⁹⁾

기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조업중단도 기업소들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혔다. 갑작스러운 가동중단으로 알루미늄·마그네슘 공장, 유색금속공업·화학공업 기업소의 핵심 집합기계가 손상되었으며, 용광로가 냉각되고, 코크스용광로와 마르탱식용광로의 내화벽이 파괴되었으며, 전해로(電解爐)가 쓸모 없게 되었다.¹⁰⁾

공업뿐만 아니라 철도운수도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일본인들은 다수의 철도교량, 기관고, 기관차·차량수리공장을 폭파하거나 파괴하였고, 일체의 통신망을 마비시켰으며, 많은 기관차와 차량을 파손시켰다. 철도차량도 전쟁 시기 심하게 마모되었다. 북한에 남겨진 580대의 기관차와 12,245대의 차량은 절반 이상이 고장난 상태에 있어 대대적인 수리나 응급수리가 필요하였다.¹¹⁾

이처럼 해방 직후 북한의 공업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화폐·신용체계의 붕괴, 각도 각군 사이의 교역과 교환의 마비, 남한 및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의 단절, 경험이 풍부하고 잘 교육받은 민족간부 부족 등의 요인에 의해 더욱 더 악화되어 갔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부대들은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일본군이나 일본인 소유의 공장·기업소, 원료, 설비, 기타 전리품을 접수하고 이의 보관과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장악해 갔다. 대기업소에 대한 보호관리는 소련군 부대들이 직접 담당하였고, 소기업소에 대한 보호관리는 소련군 부대들의 통제하에 지방자치기관이나 기업소의 조선인 직원들에게 위임되었다.¹²⁾

9)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4~5쪽.

10)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6~7쪽

11)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34~35쪽.

12) 유·웨·와닌 외 편, 『조선해방』(모스크바: 동양문헌출판사, 1976), 49~51쪽.

소련군 부대들은 진주 직후 북한 각지에서 신속히 일제의 산업기관들을 접수해 갔지만, 북한 전역에 걸쳐 구속력을 갖는 소련군사령부 차원의 잘 준비된 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1945년 9월 14일 소련군사령부 정치부원 그로치코가 발표한 “독립조선의 인민정부수립요강”에는 ‘일본인 소유 공장은 노동자와 기술자가 관리’하나, ‘민족적 중소기업은 (인민)위원회의 감시 하에 자유경영을 허용하는’ 산업정책이 표명되었지만 아직 일반론의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¹³⁾

1945년 10월에 들어서자 소련군사령부의 산업정책은 한층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달 8~12일 25군 군사평의회는 북한의 정치경제 생활에 통일적인 원칙을 확립하고 산업·농업·상업·재정 기관들의 사업에 조직성을 부여하기 위해 북조선5도 임시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25군 민정담당 부사령관 로마넵코 소장의 지도하에 각도 인민위원회 산업일꾼들이 참여하는 산업분과가 조직되어 활동에 들어갔다.¹⁴⁾

8일 개회식에서 소련군사령관 치스짜코프는 산업분과가 해결해야 할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는 공업과 철도운수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장·기업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방법을 결정하고, 원료원천과 그 취득자금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가동시킬 기업소를 결정하되 특히 생필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를 먼저 정상화하고, 군수산업을 평화산업으로 전환시키며, 숙련노동자·기사·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창설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는 공업과 운수의 신속한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⁵⁾

치스짜코프의 제안에 따라 산업분과에서는 공업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에 기초하여 공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13) 『혁명신문』 1945년 10월 4일; 김기석 편, 『북조선의 현상과 장래』 (서울: 조선정경연구소, 1947), 81~92쪽에서 재인용.

14)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1~2쪽.

15)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99~103쪽.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 각 부문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주어졌다.¹⁶⁾

북한에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만주까지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력발전소들이 집중되었다. 발전소·변전소·송전선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었으며, 언제라도 전면적인 조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부령의 수력발전소와 청진의 변전소만이 일본인들에 의해 변압기가 고장난 상태였고, 아오지 변전소는 변압기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다.

발전소들과 변전소들의 정상적인 가동은 전동·절연재료·전선 등 가용 자재와 전기기구 등 설비의 부족 때문에 곤란함을 겪었다. 원산석유정련공장의 조업중단에 따른 변압기 기름의 부족도 전력공업의 정상화에 적지 않은 장애를 조성하였다. 해방 이후 대부분의 공업이 조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25~30% 정도의 발전용량만이 활용되었다.

북한의 석탄공업은 주로 함경남도에 집중되었는데, 1944년에 석탄 채굴량의 60%에 달하는 160만여 톤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다. 조선에서는 무연탄과 갈탄이 채굴되었고, 코크스용석탄은 생산되지 않았다. 코크스용석탄은 매년 만주에서 160만 톤이 수입되었다. 코크스용석탄의 부족 때문에 1945년 가을 용광로와 주물공장의 작업이 마비되었다.

1945년 8월 이전에 무연탄은 19개 탄광에서 생산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5개의 탄광만이 조업 중에 있었지만, 채탄량은 해방 전의 10~15% 수준에 불과하였다. 갈탄의 경우에는 해방 전에 22개 탄광이 조업상태에 있었지만 해방 후에는 8개의 탄광만이 조업상태에 있었다. 나머지 탄광들은 목재, 폭발물, 연료 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하였다. 탄광들은 전력 부족 때문에도 전면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였다.

광층(鑛層)에는 상당한 양의 석탄이 쌓여 있었지만 석탄판매는 매우 저

16)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1~25, 173~182, 183~206쪽.

조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철도차량과 탄광 내 운송수단에 필요한 연료(가솔린) 부족에 기인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공업 기업소들이 무연탄의 주요 소비자인 철도나 공업 기업소들과 판매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정에 기인하였다.

북한에는 흑색금속광산들도 집중되었다. 1944년의 선철 생산량은 60만 톤에 달하였다. 금속공장들에는 모두 코크스용광로가 설치되었다. 연간 강철 생산량은 40~50만 톤에 달하였다. 강철은 주로 전기로를 통해 정련되었다. 북한에서는 액체연료가 생산되지 않아 마르탱식 제강법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강철의 연평균 압연능력은 12만5,000톤에 달하였다.

북한에서는 구리, 납, 아연, 텅스텐, 몰리브덴, 금, 은, 니켈, 베릴륨, 우라늄 등 유색·희귀금속의 채취가 발달하였다. 유색금속공장들은 현지 원료와 연료에 기초하여 작업하였고, 거의 모든 제품들이 현지 공장에서 가공되었다. 텅스텐 정선평광만이 가공을 위해 서울이나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생산도 북한에 집중되었는데, 생산 제품 모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전극도 현지 원료에 의거하여 광범위하게 생산되었다.

북한의 기계제작공업은 매우 빈약하였다. 많은 기계제작 기업소들 가운데 공장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것은 8개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5~50개의 동작기계를 보유한 소규모 작업장에 지나지 않았다. 농기계제작공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화학공업 역시 주로 북한에 집중되었다. 화학공업은 조선의 공업생산에서 주요한 지위를 점하였다. 1936년 공업총생산액에서 화학공업의 비중은 26.7%에 달하였다. 비료·유산·암모니아 등 화학공업의 주요 제품들은 조선 국내에서도 소비되었지만, 상당 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때문에 화학공업의 생산능력을 완전히 가동하려면 제품을 국외로 수출해야 했다.

화학공업의 주요 원료들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봉산 생산을 위한 유황은 일본에서 반입해야 했다. 화학공업은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 관련 설비를 일본에서 반입해야 생산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다. 일제 패망 이후 화학공업에 필수적인 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이 조업을 중단함에 따라 화학공업은 거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경공업과 식료품공업의 발전이 미약하였다. 경공업과 식료품공업은 남한의 원료원천에 크게 의존하였다. 경공업과 식료품공업은 원료 부족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을 조직할 수 없었다. 건재공업에서는 특히 시멘트생산이 발달하였다. 북한에서는 연간 8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였다. 시멘트생산은 석고와 고품질 석탄을 제외하고는 현지 원료에 의거하였다. 대다수의 공장들은 고품질 석탄이 공급되지 않아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였다. 벽돌공장들은 대부분 시즌이 끝나거나 기술적 결함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공업은 식민지적 편파성이 심하였고 수입 의존성이 높았다. 전력공업은 매우 높은 발전 수준에 도달해 있었지만 전동·전기자재·전기기구의 생산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고무공업은 화학제품의 수입에 의존하였고, 금속공업은 코크스용석탄·탄성고무·보오크사이트·유황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섬유공업은 면화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이처럼 허다한 종류의 원료·반제품·코크스용석탄·연료가 외부로부터 수입되었다.

해방 직후 일제 소유의 대기업소들은 거의 대부분 노동자·기술자·사무원의 대표들로 구성된 공장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선인 소유의 기업소들이 몰수되어 공장위원회로 넘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공장위원회는 생산활동의 실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정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공장위원회들은 스스로의 무기력함으로 생산현장 도처에서 무질서를 조장하였다.

북한에는 공업 각 부문의 생산과 판매 및 공급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중앙기구가 없었다. 각도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지도기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업 각 부문과 각도 사이의 경제적 연계의 단절은 공업의 복구발전을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화학공업, 광공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기업소들이 조업을 중단하였다.

소련 제1극동전선군 정치지도부 정보과장 벨리꼬프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1945년 10~11월 현재 소련군에 의해 조사된 기업소의 40%만이 조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벨리꼬프의 평가에 의하면, 조업중단 상태에 있는 기업소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기업소들 대부분은 설비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에너지 원천도 보유했고 있었다. 문제는 원료와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었다.¹⁷⁾

노동력 부족은 공업 각 부문에 공통된 현상이지만, 특히 석탄공업에서 심각하였다. 석탄공업의 노동자들은 정규 노동자들과 노동의무 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동원된 임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방 후 임시 노동자들 상당수가 귀향하자 노동자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가 초래되었다. 해방 전에 약 5만 명의 노동자들이 탄광에 고용되어 있었지만, 1945년 10월경 고용인원은 이전의 4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산업분과의 협의과정에서 경제관리의 중앙집중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이 강구되었다. 소군정 지도부도 “북한 공업 각 부문의 정상적인 가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각도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활성화해야 하며 공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중앙집중화해야 한다”¹⁸⁾고 판단하였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 각 부문의 중앙집중적인 지도기관을 창설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¹⁹⁾

석탄공업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채탄의 조직화와 계획화, 석탄판매의 지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북조선석탄공업트러스트를 창설하고, 각도에 탄광관리국을 설치하며, 트러스트가 임명한 지배인이 탄광을

17)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56~59쪽.

18)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24쪽.

19)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90~96쪽.

관리할 것이 결정되었다. 전력공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발전소를 트러스트 형태로 통합시키고, 전력배분과 전기료 징수를 위해 트러스트에 직속하는 두개의 관리국-서부관리국과 동부관리국을 조직할 것도 결정되었다.

모든 철도망을 2개로 분할하여 평양과 함흥에 각각 철도관리국을 설치할 것도 결정되었다.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평양철도관리국과 함흥철도관리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북조선철도관리위원회를 조직하되 평양철도관리국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게 하였다. 우편·전신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북조선전보통신관리총국을 조직할 것도 확정되었다.²⁰⁾

이처럼 5도회의에서는 경제생활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중앙집중적인 부문별 관리기구를 창설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되었다. 소군정 지도부는 이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행정경제 전반에 걸친 중앙집중적인 지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하에 소련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공업지도기구를 설치하고 각도 인민위원회에 공업지도를 담당하는 소련의 전문가 그룹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²¹⁾

회의에서는 공업 각 부문의 작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긴급대책들도 마련되었다.²²⁾ 석탄공업의 경우 1945년 11월 1일까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석탄을 채굴하는 24개 탄광의 조업을 재개할 것과 탄광에서 사용되는 폭발물을 제조하는 공장을 가동시킬 것이 결정되었다. 철도와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여 70만 톤에 달하는 석탄의 수송에 착수할 것도 결정되었다.

전력공업의 경우에는 함경북도 청진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함흥지역에서 5만kw 용량의 예비 변압기를 청진변전소로 이송할 것과 변압기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원산석유정련회사를 가동시킬 것이 결정되었다. 경

20)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90~96쪽.

21)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25쪽.

22)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90~96쪽.

공업의 경우에는 생필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원료공급 문제를 해결하여 각종 기업소들을 가동시킬 것이 확정되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조선인 공업간부의 극심한 부족을 고려하여 북한에 남아 있는 일본인 기사·기술자를 공업 각 부문에 투입시킬 것이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소련에서 필요한 수의 생산 조직자—기사·기술자·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업 각 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임무를 맡길 것과 조선인 공업간부 양성을 위해 단기강습을 조직할 것이 예정되었다.²³⁾

III. 공업의 복구와 가동

1945년 9월 소련국방위원회 전권대표 사부로프 대장이 지휘하는 조선그룹은 북한의 주요 중공업 기업소들을 등록하고 그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련의 여러 경제부처에서 80명의 전문가들을 차출하여 북한 각지에 파견하였다. 조선그룹은 이후 전문가들이 더 보충되어 그 성원이 138명으로 확대되었다. 조선그룹의 활동은 1945년 11월초에 기본적으로 종결되었고, 조선그룹에 속한 소련 전문가들은 북한 주둔 소련 군사령관 휘하에 새로 조직된 북한산업고문관 켈레즈노프 대좌의 그룹으로 인계되었다. 산업고문관은 1946년 1월 꼬르골렌코 대좌로 교체되었다.²⁴⁾

사부로프가 지도한 조선그룹의 활동은 북한 공업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그룹은 조사활동 결과에 기초하여 중공업에 대한 상세한 기

23)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24쪽.

24)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함 1, 문서철 6, 6쪽.

술·경제적 개관을 작성하였고, 이 자료에 의거하여 중공업의 복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안하였다. 조선그룹의 제안은 이후 북한의 중공업 기업소들의 복구가동을 위한 소련정부 차원의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²⁵⁾

소련 전문가들은 산업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산업국을 창설하고 산업국에 공업관리 기능을 집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업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소련군의 전리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료 중 소련군이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원료를 어디로 이관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소련 전문가들은 일체의 대공업에 대한 지도관리는 켈레즈노프 그룹에 위임하되, 소공업·가내공업·지방공업에 대한 지도관리는 각도 인민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련 전문가들은 공업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소련군사령부가 기업소들의 실제 작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인 소유의 기업소들에서 공장위원회들을 해체하고 켈레즈노프 그룹을 통해 관리자들과 기사장들을 임명할 것과 소련군사령부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기관들이나 사회단체들이 관리자들과 기사장들을 교체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소련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발전의, 중공업의 계획적 발전의 최초단계의 주요 방향도 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최단기간 내에 알루미늄 공장들을 제외한 유색금속공업 기업소들, 금·납·구리·텅스텐 등을 채굴하는 광산들, 전극·시멘트·탄화칼슘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여 생산 제품을 모두 소련으로 반출할 것이 예정되었다.

공업설비의 철거와 반출도 계획되었다. 소련 전문가들은 중공업 분야의 석탄 수요의 감소에 따라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일부 석탄공업 기업소들을

25) 이하 사부로프 그룹의 제안에 대해서는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173~182, 183~206쪽을 참조할 것.

폐쇄하고 일체의 고가장비를 철거하여 소련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흑색금속공업 분야에서는 북한 공업과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연산 18만 톤 규모의 설비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하여 소련으로 반출할 것과 5개의 알루미늄 공장 가운데 4개 공장을 철거할 것도 주문하였다.

북한의 공업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수입해 온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전문가들은 소련으로부터 원료와 반제품을 수입할 것과 특히 남북간에 상품교환을 조직할 것을 권고하였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매달 20~30만kw의 전력을 송출하고, 5~7만 톤의 석탄과 염화석회·비료·카바이트·전극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남한에서 면화·농기계·전기부속품·농산물(특히 양곡)을 반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련 전문가들은 공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개인 기업가들의 창발성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소련군사령부의 허가 없이 제품·설비·원료를 몰수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기업가들에게 보호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조선인 소유자들로부터 몰수한 일체의 기업소들을 소유자들에게 반환하고, 사회단체들이 기업소들에서 징발한 운송수단을 기업소들에 반환할 것이 검토되었다.

소련 전문가들은 경공업·섬유공업·건재공업 분야에서 개인 기업가들에게 자신의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소련군사령부에서는 경공업·식료공업·건재공업 분야에서 일본인 소유 기업소들의 신속한 가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이 기업소들을 조선인 기업가들에게 15~30년간 임대해 주거나, 사적 자본을 끌어 들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조소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²⁶⁾

26)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433847, 문서철 1, 134~135쪽.

조선그룹의 제안은 1945년 11월 이후 대부분 현실화되었다. 1945년 11월 19일 소련군사령부는 ‘경제생활의 통일적 지도와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며 민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북조선 행정10국을 창설하였다.²⁷⁾ 산업국장에는 정준택(鄭準澤)이 임명되었다. 산업국은 계획부와 총무부 외에 공업부문별 관리부서인 연료공업부, 광업부, 경공업부, 화학공업부, 건재공업부, 식료공업부, 전기부로 구성되었다. 산업국은 아직 흑색·유색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부서는 갖추지 못하였다.²⁸⁾

소련군사령부의 명령에 의거하여 북조선 산업국은 각도 국유기업장의 운영방침을 허가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산업국은 각도 국유기업장의 운영방침과 관리자 선정을 허가하거나 기술자 재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각도 국유기업장의 운영자금과 각종 자재의 조달·교류도 산업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산업국은 또한 각종 생산품의 규격제정과 검사방침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국은 각도 인민위원회 산업국·관리국·국유기업장의 기술지도, 경리감사, 노무조정 및 후생상황을 감찰지도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²⁹⁾

산업국은 각도의 산업현황에 대한 조사작업도 착수하였다. 산업국은 각도 인민정치위원회에 1945년 12월말까지 기업장 현황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직접 공업현황조사를 위해 각도에 전문가들을 파견하였다. 이들에게는 공업부문별 기업소수, 관리체계, 계획 및 실제 생산능력, 원료원천, 기계품의 판로, 노동자와 기술자의 총원, 설비상태, 경비질서, 전력보급상태 등을 포함하는 기업장 현황조사를 위한 상세한 목록이 배포되었다.³⁰⁾

27) 『正路』, 1945. 11. 25.

28)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343253, 문서철 9, 181~182, 183~187쪽.

2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 155쪽.

30) 위의 책, 155쪽;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343253, 문서

공업 부문별 관리기구도 창설되었다. 주요 탄광들은 2개의 관리국으로 통합되었다. 1945년 11월 27일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의 50개 탄광을 망라하여 서선석탄관리국이 창설되었다. 12월 11일 함경북도의 78개 탄광들을 관리하는 12개 탄광관리소들을 통합하여 북선석탄관리국이 창설되었다. 전력산업의 지도를 위해 북조선전기주식회사가 창설되었다. 이 회사에는 일체의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배전망이 망라되었다.³¹⁾

1945년 11월 소련정부의 결정에 따라 소련으로 반출해 갈 공업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중공업 기업소들의 복구와 가동이 시작되었다. 11월 20일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메레츠코프는 북한의 각종 중공업 기업소들의 생산개시 명령서를 하달하였다. 11월 27일 소련군사령관은 메레츠코프의 명령서를 실행하기 위해 후방국장 체렌코프 소장에게 산업고문관 켈레즈노프와 함께 각종 중공업 기업소들의 생산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였다.³²⁾

후방국장에게는 중공업 기업소들의 일일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가동시기와 정상적인 운영시기에 기업소들에 대한 물질·기술적 보급을 조직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후방국장은 기업소들의 가동과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식량, 연료, 자동차 운송 등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임무도 부여받았다. 이 목적을 위해 25군이 전리품으로 획득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원료, 자재, 설비 등을 활용할 것이 예정되었다.

25군 재정부장은 특별은행이 창설되기 전까지 25군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계품의 대금으로 혹은 신제품의 생산을 담보로 기업소들의 재정을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기업소들의 복구와 가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고문관 켈레즈노프 그룹에서 전문가들

철 9, 177쪽.

31)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함 1, 문서철 6, 11~13쪽.

32)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379, 목록 11034, 문서철 22, 122~124쪽.

이 임명되었다. 25군 간부들도 각 공장, 기업소, 광산의 관리자와 보좌관으로 배치되었다.

1946년 5월 31일 쉬띠코프가 소련외무상 물로토프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45년 11월 15일에서 1946년 5월 1일까지 24개의 광업 기업소, 5개의 유색금속공장, 2개의 흑색금속공장, 흥남화학공장, 2개의 전극·카바이트 생산 공장, 3개의 화학공장 등 38개의 중공업 기업소들이 복구되어 가동되었다. 기업소들의 복구가동 작업에는 켈레즈노프 산업고문관 지휘하에 배속된 177명의 소련 공업기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³³⁾

기업소들의 복구가동과 함께 북한 상품의 반출이 시작되었다. 1946년 5월 1일까지 3,460만 엔의 전리품과 신상품이 소련으로 반출되었다. 반출된 제품 중에는, ① 1,500kg의 금과 5톤의 은이 함유된 4,261톤의 구리와 납 광석, ② 20톤의 베릴륨, ③ 178톤의 페로텅스텐, ④ 1,550톤의 형석, ⑤ 454톤의 흑연, ⑥ 1,388톤의 전해연, ⑦ 2.5톤의 탄탈니오브 등이 포함되었다. 1946년 5월 1일 현재 각 공장·광산의 창고에는 1억4,600만 엔의 재고품이 보관되어 있었고, 1946년 2/4분기에는 1억9,420만 엔의 신상품이 추가적으로 생산될 계획이었다. 이 재고품과 신상품은 모두 소련으로 반출될 예정이었다.³⁴⁾

소련정부는 북한의 중공업 기업소들의 복구와 가동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공급하였다. 1945년 12월부터 1946년 6월 1일까지 소련정부는 소련국립은행 야전지점과 조선중앙은행을 통해 중공업 기업소들의 복구가동을 위해 1억980만 엔의 소련군사령부 군표를 공급하였다. 이 자금은 주로 노동자들의 임금지급과 생산경비로 충당되었다.³⁵⁾

33)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6, 목록 8, 문서함 39, 문서철 638, 76~80쪽;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함 4, 문서철 11, 76쪽.

34)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6, 목록 8, 문서함 39, 문서철 638, 76~80쪽. 가격표 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945년 8월 15일 현재 가격으로 한다.

35)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함 1, 문서철 6, 8쪽; 러시아대의정

1945년 11월 공업설비의 계획적인 철거와 반출이 개시되었다. 남한 주둔 미군정 정보보고서들은 소련군과 태평양함대에 의해 자행된 북한 공업설비의 철거와 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1946년 1월 북한에서 월남한 조선민주당 지도부도 소련군에 의한 공업설비의 철거 사실을 열거하며 공개적으로 이를 비난한 바 있다. 남한의 좌파 인텔리와 해방 직후 북한에 체류했던 일본인 기술자들도 공업설비의 철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³⁶⁾

소련군에 의한 공업설비의 반출은 한때 미소간에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1945년 11월 초 미 국무장관 번스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 해리만은 소련군에 의한 수풍발전소 설비의 철거에 항의하는 각서를 소련 외무부상 비스스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11월 13일 비스스키는 북한에서 어떠한 발전소 설비도 철거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당시 수풍발전소에 남아 있던 일본인 기술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제3, 4, 5호가 철거되었다고 증언하였다.³⁷⁾

공업설비의 철거와 반출은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쉬띠꼬프는 소련군이 1945년 9월에 공장·기업소의 설비들과 건설기계들을 철거하여 소련으로 반출할 계획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³⁸⁾ 소련민정청 문서들도 이미 1945년 8~9월에 태평양함대의 부대들이 금속가공공작기계, 발전설비, 아오지인조연료공장의 검사측정기, 기계제작설비, 원산석유정련공장의 용접기와 검사측정기, 청진기관차

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함 2, 문서철 7, 32쪽.

36) Hak 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pp.557~574;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東京: 嚴南堂書店, 1964), 207쪽.

37)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45, T.6. p.1118, 1125;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207쪽.

38) 『쉬띠꼬프일기』, 1945. 8. 30; 9. 8.

수리공장의 설비 등을 철거하여 소련으로 반출해 갔음을 입증하고 있다.³⁹⁾

현재로서는 소련으로 반출된 공업설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소련민정청 교통부장 돌기호가 작성한 보고서⁴⁰⁾는 소련측 자료로서 공업설비의 반출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문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46년 2월말까지 북한의 철도운수는 공업설비와 전리품의 반출 및 군부대의 수송에 전적으로 복무하였다. 1946년 1월 31일 현재 2,000대의 차량이 공업설비를 실어 나르기 위해 사용되었다. 1946년 2월 28일 현재 공업설비 반출을 위해 1,000대의 차량이, 전리품 반출을 위해 4,000대의 차량이 사용되었다.

돌기호는 공업설비 반출을 최대한 증대하기 위해 북한 인민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화물수송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여객수송도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1946년 4월까지도 북한 철도수송량의 50%가 여전히 소련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소련군에 의한 공업설비의 철거와 반출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전개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1945년 11월말부터 중공업 기업소가 복구되어 생산이 재개되었지만, 기업소들의 복구가동은 기본적으로 중공업 제품의 대소반출을 증대시키는 목표에 종속되어 있었다. 기업소들의 복구가동과 함께 이와는 정반대로 공업설비의 철거와 반출이 전개되었다. 공업설비의 철거는 생산제품의 판로를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조업에 필수적인 원료가 현지에서 충족되지 않는 비교적 발전되고 현대적인 공장들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북조선 산업국도 기업소들의 복구가동에 착수하였다. 1946년 1월 소련군

39)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합 2, 문서철 7, 66쪽;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343253, 문서철 9, 122쪽.

40)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합 1, 문서철 5, 13~14쪽;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합 1, 문서철 6, 24~25쪽;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합 2, 문서철 7, 102~103쪽.

사령부는 대소규모의 금속공업 기업소들의 조업에 필요한 원료·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금속공장에 대한 관리권을 산업국으로 이관하였다. 이 결정에 의해 생필품과 농업용구를 생산하는 약 150개의 소기업소들이 조업을 재개하였다. 소련군사령부는 경공업 기업소들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및 공장·광산·탄광의 창고들도 산업국으로 이관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기업소들은 가동에 필요한 일부 자재를 공급받아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⁴¹⁾

각도 인민위원회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소들의 복구가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46년 4월 한달 사이에 평안남도에서는 3개의 금속공장, 12개의 탄광, 4개의 배전소, 7개의 광산, 18개의 섬유기업소, 1개의 농업 기업소, 15개의 식료공업 기업소, 21개의 임업 기업소, 기타 4개의 공장들이 복구되어 조업에 들어갔다. 황해도에서는 8개의 중공업 기업소와 49개의 경공업·식료공업 기업소가 복구되어 가동되었다.⁴²⁾

공업의 복구가동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다. 공업의 복구가동은 액체연료와 코크스용석탄 등 일련의 자연자원이 전적으로 부재하거나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혹은 완제품·부품·기타 기술물자의 생산이 부족하거나 자체 생산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했다. 해방 이후 원료·연료·자재의 재고가 급속히 고갈되어 감에 따라 기업소들은 조업중단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⁴³⁾

소련정부의 결정에 따라 1946년 하반기에 조소무역이 개시되면서 공업의 복구가동은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1946년 전 시기에 걸쳐 조소무역은 북한의 공업에 원료·자재·설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 코크스용석탄의 수입은 사실상 결렬되었다. 사할린에서 10만 톤의 코크스용석탄

41)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함 1, 문서철 4, 3쪽.

42)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102038, 문서철 2, 305~306쪽.

43)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함 1, 문서철 6, 9쪽.

이 수입될 예정이었지만 수입량은 모두 1만8,500톤에 그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철도운수와 흑색금속공업은 항상 조업중단의 위협에 직면하였다.⁴⁴⁾

공업의 복구가동에는 군수생산을 평화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어려움도 따랐다. 일본인들은 조선의 공업을 전쟁의 필요에 종속시켰다. 대다수 기업소들은 일본군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무하였다. 때문에 기업소들을 단순히 복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고 군수생산에서 민수생산으로 기업소들을 개조하는 일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공업의 복구가동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조성하였다.

기사·기술자들의 부족도 공업의 복구가동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소련군의 북한 진주 이후 거의 모든 일본인 기사·기술자들과 일체의 일본인 공업관리조직은 일본이나 남한으로 도주하였다. 퇴각시 일본인들은 기업소들의 기술문건을 약탈하거나 파괴하였다. 단지 일본인 기사·기술자들과 일본인 공업관리조직이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다수 기업소들이 조업을 중단하였다.⁴⁵⁾

공업설비의 철거와 반출도 공업의 복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점은 원산석유정련회사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이 공장은 경유, 자동차유, 벤진, 등유, 디젤유 등에 대한 북한 공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군에 대한 윤희유 공급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 공장이 태평양함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자 태평양함대는 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설비를 철거하였다. 그 결과 석유정련공장은 1948년 말까지도 가동되지 못하였다.⁴⁶⁾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1947년 1월 1일 현재 822개의 공업 기업소들

44)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합 4, 문서철 11, 78~79쪽.

45)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소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32~34쪽.

46)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2, 문서합 1, 문서철 5, 6~7쪽.

이 복구되어 가동되었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228개의 기업소들은 소련군사령부의 지도와 소련 공업기사들의 직접적인 참여 하에 복구·가동되었고, 594개의 소기업소들의 복구·가동에도 소련 공업기사들은 커다란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였다.⁴⁷⁾

1946년 하반기에 들어와 북한 공업 기업소들의 활동은 일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수행되었다. 1946년 하반기 생산계획은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의 복구에 주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46년 하반기 생산계획은 전체적으로 76%의 완수율을 기록하였다. 1946년 공업총생산액은 1948년 가격으로 50억9,836만 원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944년 북한 공업총생산액의 25.6%에 달하는 것이다.⁴⁸⁾

1946년에 북한의 공업은 인민경제의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농업에 비료를 공급하고, 철도운수와 공업 및 주민들에게 석탄을 공급하며, 북한 및 만주와 남한에 전력을 송출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946년에 북한의 공업은 인민경제의 기본적인 수요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었다.

IV. 주요 산업의 국유화

소련정부는 일제가 북한에 건설한 일체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이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소련정부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1953~

47)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7쪽.

48)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함 4, 문서철 11, 78~81쪽;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8쪽.

55년 북한 주재 소련대사로 근무하였던 소련외무성 제2극동과 책임보고자 수즈달레프는 1945년 12월 외무성 지도부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 위치한 일제의 침략정책 수행에 복무한 일제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은 전부 일제로부터 무조건 몰수되어야 한다. 소련군에 대항한 일본군을 위해 이러저러한 형태로 복무한 북한에 위치한 일제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은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소련군이 치른 거대한 희생의 대가로 접수되어야 한다. 북한에 위치한 일제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은 일제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의 일부로서 또는 1918~23년 극동에서 일본군의 간섭으로 야기된 손실을 포함하여 일제가 소련에 끼친 막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소련에 이관되어야 한다.”⁴⁹⁾

1946년 1월 소련정부에서 조소합작주식회사의 창설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때 소련정부는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서 일제의 군사적 목적에 복무해 온 일제의 일본 기업소들은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소련정부의 재산으로 간주하며, 일본 기업소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측에 소유권을 완전히 양도하되, 그 밖의 모든 일본 기업소들은 조소합작주식회사의 구성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조소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⁵⁰⁾

1946년 3월 16일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단에 하달된 소련정부의 훈령은 일본인 및 조선인 독점체 소유의 대공업·은행·지하자원·산림·철도 등을 국유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군의 보급을 담당한 조일합작회사를 포함하여 일제의 군수공업 기업소들은 국유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업소들은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었다.⁵¹⁾

49)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102, 목록 1, 문서합 1, 문서철 10, 218~225쪽.

50)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18, 목록 8, 문서합 6, 문서철 80, 2~5쪽.

이처럼 소련정부는 시종일관 북한에 소재한 일제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을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소련정부의 소유물로 간주하였다. 바로 이러한 입장이 북한에 소재한 일제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을 소련 경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활용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것이다. 1946년 전반기 내내 거대한 양의 전리품과 중공업 기업소들의 신상품이 소련으로 반출되고 공업설비들이 철거된 것은 소련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⁵²⁾

소련으로 반출된 북한 상품들에 대한 보상은 지불되지 않았고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었다. 소련 외무부상 로조프스키는 북한에 위치한 일제 소유 기업소들의 생산경비와 직원들의 임금이 소련군사령부 군표로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소들에서 생산되어 소련에 납입된 상품들의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약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였다.⁵³⁾

일제 소유의 중공업 기업소들을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간주하고, 이 기업소들의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소련으로 반출해 가고,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소련으로 반출해 가는 소련정부의 행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소련의 대북한정책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슈피코프의 특별보좌관 프라프초프가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 인텔리의 반소정서(反蘇情緒)를 잘 전해주고 있다.

“국유화 법령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주요 산업기관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이관되기 전에 대부분의 북조선 인텔리는 일제의 기업소 설비들이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소련으로 반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북조선 인텔리는 소련군사령부를 신뢰하지 않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북조선

51)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7, 목록 11, 문서함 18, 문서철 280, 1~8쪽.

52)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함 4, 문서철 11, 81쪽.

53)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18, 목록 8, 문서함 6, 10~11쪽.

임시인민위원회의 개혁조치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북조선에 조선민족 소유의 공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모든 조치들은 공허한 헛수고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런 본질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⁵⁴⁾

소련군사령부는 북한 주민들, 특히 여론형성층인 북한 인텔리의 반소정서를 고려하여 소련군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의 군수공업·중공업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6년 6월 12일 쉬띠코프는 스탈린과 몰로토프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체 소유의 산업기관들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양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946년 7월 27일 소련 각료회의는 쉬띠코프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에 소재한 일체 소유의 산업기관들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였다.⁵⁵⁾

1946년 8월 5일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는 일본이 조선에 건설한 일체의 산업기관들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이관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를 25군 군사평의회에 하달하였다. 명령서는 8월 10일부터 소련민정청장 로마네프와 산업고문관 꼬르플렌코의 책임 하에 이관작업에 착수할 것을 규정하였다. 명령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일체 소유의 산업기관을 접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소련군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공포

54) 웨·이·끄라프초프, 조선의 정치정세에 대한 보고 필자문서 (1947), 69쪽. 이 보고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쉬띠코프의 명의로 전 연방공산당(불)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문서는 현재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121~303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당 중앙에 보고된 문서에는 필자가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쉬띠코프의 입장에서는 소련정부의 정책에 대한 북조선 인텔리의 반감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끄라프초프의 보고 초안을 그대로 당 중앙에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55)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6, 목록 8, 문서함 39, 문서철 638, 91~94쪽. 1946년 7월 27일자 소련각료회의 결정서는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서”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원문을 구할 수 없었다.

가 금지되었다.⁵⁶⁾

연해주군관구에서는 산업국유화 실시에 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법령 초안도 작성되었는데, 이 초안은 1946년 8월 10일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법령으로 채택되었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일본이 조선 내에 건설한 일체의 기업소, 발전소, 탄광, 광산, 철도 등은 반드시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국가의 발전과 조선인민의 생활향상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사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상업 및 문화기관·은행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⁵⁷⁾

이처럼 국유화 법령에 따라 일본인들과 조선민족 반역자들 소유의 일체의 산업기관들에 대한 처리방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국유화 법령에 따라 일본인들 소유의 산업기관들은 무상으로 몰수되어 국유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 소유의 산업기관들은 소련군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통일적으로 장악되고 이에 대한 점유·처분권은 물론 소유권이 확정되어 국가적 소유가 확립되었다.

국유화 법령은 북한 인텔리의 대소정서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국장 이문환은 소련정부의 선의로 조선인민은 일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조선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평가하였다. 이문환은 진실로 소련정부와 소련군만

56)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379, 목록 532092, 문서철 2, 113~115쪽.

57)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 177쪽.

이 피압박 인민을 깊이 배려하고 사심 없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찬양하였다.⁵⁸⁾

국유화 법령의 효력은 북한에 한정되었지만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이 법령의 실시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1946년 8월 12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는 산업국유화가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북민전 중앙위원회는 미군정이 조선의 경제적 예측을 추구하는 반동정책을 중지하고 일본 인들과 반역자들 소유의 산업기관들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⁵⁹⁾

산업기관들의 접수와 인계를 실행하기 위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소련군사령부 대표들로 공동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북한측에서는 김용범(金鎔範), 이문환, 이봉수(李鳳洙-재정국장), 박병섭(朴炳燮-채신국부국장), 안의근(安義根-교통국부국장) 5명으로 접수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소련측에서는 니콜라예프 대좌(25군 공병부대장), 꼬르쿨렌코 대좌(산업고문관), 로지오노프 중좌(민정청 산업지도부장), 구레예프 소좌, 도브고블 대좌 5명으로 인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공동위원회 밑에는 인민경제 부문별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었다.⁶⁰⁾

산업기관들의 이관작업은 1946년 8월에 시작되어 10월에 완료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접수한 산업기관들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총액이 44억3,000만 엔에 달했다. 이 밖에도 건설 중에 있는 2억9,500만

58)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102038, 문서철 2, 324쪽.

59) 北朝鮮中央民戰書記局, 『民主建國에 있어서 北朝鮮民戰의 役割』(평양: 조선출판사, 1947), 155~170쪽.

60)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102038, 문서철 2, 326쪽;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 177~178쪽. 박병섭은 이후 채신국장 조영렬(趙永烈)로 교체되었다. 안의근은 자료에 따라서는 안인권(安仁權), 안인건(安仁健)으로도 표기된다(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102038, 문서철 3, 1~2쪽).

<표 1> 국유화된 공업 기업소들의 내역과 가격

공업 부문	개수	금액(엔)
1 중공업·기계공업 공장	81	1,382,761,000
2 광산	196	313,851,955
3 석탄공업 탄광	47	225,669,245
4 연탄공장	23	13,629,245
5 경공업·식료공업 기업소	407	373,636,520
6 임업·목재가공공업 기업소	77	36,197,531
7 어업공업 기업소	73	67,254,301
8 철도, 하천·해상운수: 기술장비·통신·주거건물·공용건물을 포함한 3,929.7km의 철도; 922대의 기관차·전기기관차·궤도차·기중기; 15,926대의 차량; 6개의 기관차·차량수리공장; 735척의 하천·해상 운송수단; 768대의 자동차 운송수단		1,118,405,808
9 수력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131만8,800kw 발전용량의 19개 수력발 전소, 전압 66kw 이상의 63만4,000kwa 용량의 8개 변전소, 전압 3 ~66kw의 47만9,000kwa 용량의 10개 변전소, 66kw 이상의 송전선 1,783.5km, 3-66kw의 송전선 8,399km		717,900,000
10 전신전화국, 통신선		
총액		4,431,316,361

출전: 에스·엘·찌호빈스키 외 편, 『소련과 인민조선의 관계. 문서와 자료. 1945~1980』 (모스크바: 과학출판사, 1981), 25~26쪽.

엔 상당의 5개 수력발전소가 조선인민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관된 기업소들의 총액은 47억3,000만 엔에 이르렀다.

전체 산업의 90%에 달하는 1,034개의 공장·기업소들이 이관되었다. 국유화된 기업소의 부문별 구성은 <표 2>와 같다. 이관된 기업소의 80%에 이르는 822개 기업소는 가동상태에 있었다. 가동 중에 있는 기업소들은 원료, 반제품, 완제품, 고가장비, 보조생산시설 및 대차대조가 모두 함께 이관되었다. 가동되지 못한 기업소들은 소련군이 접수하였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로 이관되었다. 기업소들 외에 북조선중앙은행과 서울에 본점을 둔 58개 은행저점들도 양도되었다.⁶¹⁾

<표 2> 국유화된 부문별 기업소수

인민경제부문별	국유화된 공장·기업소수	인민경제부문별	국유화된 공장·기업소수
전력공업부문	47	경공업부문	297
연료공업부문	66	농림 및 임업부문	55
유색금속공업부문	207	어업부문	74
흑색금속공업부문	83	운수부문	13
화학공업부문	88	담배 소금 양주 인삼 가공	6
건재공업부문	62	기타	36
합계			1,034

출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북한경제통계자료집』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4), 142쪽.

산업국유화는 북한의 주민들 속에서 소련의 위신을 드높였다. 기업소들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북한 각지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노동자, 기사, 사무원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각지에서 개최된 집회에서는 조선에서 일본인들을 구축하고, 조선의 산업을 보호하여 조선인민의 소유로 이관하고, 공업의 복구가동에 거대한 원조를 베풀어 준 소련군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⁶²⁾ 재정국장 이봉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회의에서 “붉은 군대는 우리 경제를 위해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관하고 있다”고 찬양하였다.⁶³⁾

61)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합 4, 문서철 9, 65쪽;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합 4, 문서철 10, 48쪽;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19, 목록 560, 문서철 8, 7쪽.

62)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68~69쪽.

그러나 소련군의 통제하에 있던 일제의 소유재산 모두가 국유화 조치를 통해 일거에 조선인민의 소유로 이관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일제의 소유였다가 종전 후 소련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 기업소들, 상업기관들, 문화기관들 모두가 일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아니다. 국유화 법령의 대상에는 121개의 광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 기업소들은 국유화 이후에도 여전히 소련군의 관할 하에 있었다.⁶⁴⁾

북한에서 송환된 일본인들의 막대한 소유재산도 국유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옥, 가내공업 작업장, 여관, 클럽, 학교 등 일본인들의 소유재산은 여전히 소련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북한에서 송환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국유화되지 않은 일제의 동산, 부동산, 가사용품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947년 10월에 비로소 조선인민의 소유로 이관되었다. 이 때도 일본인들의 소유재산은 무상으로 이관되었지만 소련군의 필요를 위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⁶⁵⁾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10월 21일 약정서에 의거하여 소련군으로부터 총액 11억 엔의 일본인들의 소유재산을 접수하였다. 이 중에는 3만3,000여 동의 가옥과 여관, 2만2,009동의 상가건물·창고·차고·작업장·학교·병원·목욕탕, 상하수도 시설, 설비·자재, 가사용품, 2만3,000여 동의 가축, 146개 관개시설, 39개 미완공 관개시설이 포함되었다.⁶⁶⁾

국유화 이후 국영 기업소들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지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국에 매개 공업부문마다 전문적인 관리부서들이 창설되었다. 1946년 11월 3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23호 “산업국 기구개

63)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목록 102038, 문서철 2, 325쪽.

64)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2쪽.

65)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문서군 5446, 목록 49a, 문서철 212, 2~5쪽.

66) 에스·엘·찌호빈스키 외 편, 『소련과 인민조선의 관계. 문서와 자료. 1945~1980』, 31~32쪽.

정에 관한 건"에 따라 산업국 안에 서무부·노동간부부·기획부·감리부 등의 직능부서들이 설치되는 한편, 전기처·건재공업처·광업처·흑색금속처·유색금속처·화학공업처·경공업처·지방산업부 등의 생산관리부서들이 별도로 조직되었다.⁶⁷⁾

탄광을 제외한 국영 기업소들은 산업국의 생산관리부서에 의해 관리·운영되게 되어 각도의 지방분권적인 관리조직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탄광은 산업국 산하 지역 석탄관리국에 의해 관리되었다.⁶⁸⁾ 산업국에는 아직 기계공업부서가 창설되지 못하였지만, 흑색·유색금속공업에 대한 관리기구의 창설은 산업국으로 하여금 거의 모든 산업부문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국유화된 기업소들 가운데 214개의 대기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는 산업국에 집중되었다. 중소기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는 각도 인민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상공업 지방공업과에는 42개의 기업소가 이관되었다. 9개의 기업소는 개인 상공업자들에게 넘겨졌는데, 이 중 14개는 매각되었고 80개는 임대되었다. 77개의 입업 기업소는 농림국의 관리하에 놓여졌다. 채산성이 없는 소규모 탄광·광산·기업소는 폐쇄되고 그 인적·물적 자원은 주요 기업소로 집중되었다.⁶⁹⁾

이처럼 기업소들에 대한 분산적인 지도관리는 종식되었다. 중앙정권기관에서는 주요 공장들, 기업소들을 직접 관리하는 동시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한 생산과제를 유일적으로 설정해 주고 원료를 배당하고 자금을 자를 실시하며 제품판매를 조직하고 계산과 통제를 강화하였다. 지방정권기관은 중소 규모의 지방 국영공업과 개인기업, 개인기업가들의 경영단체 등을 담당하였다.⁷⁰⁾

67) 손전후, 『산업국유화경험』, 107~108쪽.

68) 박영근, 『우리나라에서의 공업관리조직형태의 개선강화』, 17쪽.

69)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함 4, 문서철 10, 48~49쪽;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3쪽.

주요 산업의 국유화 이후 북한에서는 국영 기업소들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생하였다. 사회주의적 부문은 발생과 동시에 공업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946년도 공업총생산고의 소유형태별 구성 비율은 국영 및 협동단체 공업을 토대로 하는 사회주의적 부문이 72.4%를 점하였고, 개인공업에 기초로 하는 사적 자본주의적 부문이 27.6%를 차지하였다.⁷¹⁾

국영공업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화 관리기구가 창설되었다. 1946년 12월 23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계획부는 계획국으로 재조직되었다. 이와 함께 각 도인민위원회에 계획과가 조직되었으며, 각 시·군 인민위원회에도 계획계가 조직되었다. 모든 국영 기업소들에도 전문적인 계획화 기구들이 창설되었다.⁷²⁾

주요 산업의 국유화 이후 국영 기업소들의 경영방법으로 유일관리제와 독립채산제가 도입되었다. 1946년 11월 3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산업국에 직속하는 국영공장 및 광산에서는 유일관리제의 일정 요소들이 실시되었다. 기업장 책임자는 당해 기업장의 업무를 총리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기업장 책임자는 산업국장의 승인을 얻어 기업장의 직제제정, 직원의 정원 및 그 배치, 매년도 운영방침·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물론 이 시기 국영 기업장에서 유일관리제의 실시는 매우 제한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기업장 책임자는 소정 감독기관의 지시없이 생산품, 자재, 기타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었다. 기업장 책임자는 직원 중 부장 이상의 지도적인 간부성원을 독립적으로 임명하거나 해고시킬 수도 없었다. 이것은 산업국장의 특권에 속하는 것이었다.⁷³⁾ 이것은 관리자

70) 손전후, 『산업국유화경험』, 107~108쪽.

71)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해방 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18쪽.

7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 81~83쪽.

73) 위의 책, 187쪽.

아직 경험이 일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관리방법을 체득하고 있지 못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위의 결정에 따라 국영 기업소들에는 독립채산제도 도입되었다. 기업장 책임자는 해당 기업장의 경리·경영에 대한 독립채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국영 기업소들은, 이 기업소들이 모두 국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의 처분과 관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경제활동의 조직에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지니고 있었다. 국영 기업소들은 단일한 국가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소들로부터 생산수단을 취득하여 이용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생산비를 변제한 후에는 국가에 일정한 이윤을 남겨줘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채산제는 생산활동에서 국영 기업소들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⁷⁴⁾

1945~46년에 많은 공업 기업소들이 복구되었지만, 복구된 기업소들은 아직 생산능력을 완전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유화된 공업은 인민경제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산품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 시기 공업상품의 만성적인 부족은 늘 생필품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였고, 물가양등은 근로대중의 생활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인상공업의 발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패망 이후 조선인 소유의 상공업 기업소들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일부 조선인 기업가들은 기업소들을 방기하고 남한으로 도주하였다. 많은 기업가들은 해방 직후 조성된 정치적 상황의 유동성 때문에 기업 활동을 중지하였다. 개인 기업가들로부터 기업소들을 몰수하는 일부 지방 정권기관들의 자의적인 행동도 개인상공업을 위축시켰다.

개인공업의 생산고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즉 1944년 개인공업의 생산고는 187만8,000원(100%)에 달했지만, 1945년에는 117만 원(62.5%)으로, 1946

74)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515~517쪽.

년에는 26만4,520원(14.1%)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상공업자들의 수중에 축적된 화폐자산은 생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들의 화폐자산은 유통에서 퇴장되거나 금·귀금속·공산품 등의 사재기에 활용되어 시장물가의 앙등을 초래하였다.⁷⁵⁾

1946년 10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에 의하지 않은 개인재산의 몰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조선공민의 개인소유인 공장·제조소·기업소·탄광·창고·회사·상업기관 등은 국유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천명되었다. 개인자본을 동원하여 공산품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자 50명 이하를 고용하는 일제 소유의 공장·제조소·탄광 등을 조선 산업가들에게 방매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⁷⁶⁾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적·정치적인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보증과 보호를 획득하게 된 기업가들은 상공업 기업소들에 자금을 투여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상공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생필품의 생산을 증대시켰다. 개인 상공업자들은 인민위원회와 정치적 협력관계도 형성하였다. 이것은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이 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⁷⁷⁾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인 상공업자들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혁’이 그들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이고 판망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항구성에 대한 불안은 개인 상공업의 발전을 제약하였다. 북한의 상황은 임시적인 것이며, 통일정부가

75)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70~71쪽;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73~174쪽.

76)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 182~183쪽.

77)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73쪽.

수립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심지어는 내전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우익의 선전은 개인 상공업자들의 창발성을 위축시켰다. 개인 상공업자들은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통일과 공고한 경제적 연계의 회복 및 단일한 화폐제도의 복원이라는 조건에서만 자신의 경제활동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⁷⁸⁾

V. 1947~48년 인민경제계획

산업국유화 이후 1947~48년 북한의 산업활동은 인민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이 시기 인민경제계획은 1947년 2월 19일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에서 채택된 “1947년 북조선인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예정숫자”와 1948년 2월 6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1948년 북조선인민경제부흥발전에 관한 대책”으로 구체화되었다. 1947~48년 인민경제계획은 모두 김일성의 보고에 기초하여 채택되었지만, 경제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대책의 입안은 소련 경제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북조선인민위원회 기획국이 주도한 것이다.⁷⁹⁾

‘북조선인민정권’은 인민경제계획의 기본방향이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인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낙후성을 퇴치하고 전쟁 시기와 일제 패망 시기에 파괴된 인민경제 각 부문을 복구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

78)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379, 목록 578927, 문서철 3, 10·11쪽.

79) 『쉬띠꼬프일기』 1947. 1. 3~4;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문서군 5446, 목록 50a, 문서철 181, 8쪽. 1947년 경제계획의 작성에는 산업고문관 포르폴렌코와 소련민정청 재정부장 일라토프스끼가 직접 개입하였고, 1948년 경제계획의 수립에도 소련에서 파견된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성하고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북조선인민정권’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인민대중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민경제를 반드시 ‘유일한 국가적 견지에서’,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⁰⁾

그러나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 길이 단순히 일제통치의 결과를 퇴치하고 전쟁 당시 파괴된 민족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김일성은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경제정책의 길이 “국영부문이 지배적 세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하였다. 김일성은 1948년 3월 북조선로동당 제2차 대회 보고에서 당의 경제정책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우리 당의 경제정책의 기초는 경제의 국가적 부문과 조합적 부문과 개인적 부문의 발전을 국가적 부문의 우세와 지배적 역할을 가진 조건하에서 결합시키는 원칙이며 생산과 무역 및 금융에 대한 계획적 원칙과 국가적 관리에 대한 원칙을 수립한 경제정책입니다.”⁸¹⁾

‘북조선인민정권’은 1947~48년 인민경제계획에 입각하여 공업발전의 기본방향을 일본의 군수공업에 복무해 온 일부 공업을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평화적 시기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으로 개조하고, 현지 원료와 연료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에서 공업의 기술적 토대를 개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경공업과 생필품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대중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켜 공업에 설비·자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광공업과 중공업 생산고를 1944년의 45~50% 수준까지 복구해서 제품의 수출기반을 확대하는 것도 공업발전의 기본방향으로 규정되었다.⁸²⁾

80)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III, 89쪽.

81)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327~328쪽.

82) 러시아대외정책연구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함 4, 문서철 11, 82쪽.

1947년 인민경제계획은 공업총생산액을 1946년에 비해 191% 증대시킬 것을 예견하였다. 계획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생산조직을 개선하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경제절약을 엄수하고 도급제를 적용하여 노동생산능률을 1946년에 비해 48% 향상시킬 것이 계획되었다. 철도운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철도가 정체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행됨으로써 화물수송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완전히 보장할 것도 예정되었다.⁸³⁾

북조선로동당은 계획완수를 위한 실행대책으로 노동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일을 준수하고 노동시간에 조합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해 건국중산경쟁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생산협의회를 조직하며 작업반과 직공장의 역할을 제고할 것도 요청하였다. 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생산량을 돌파한 노동자들에게 누진적 비율로 상여금을 지불하는 도급제임금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⁸⁴⁾

1947년 인민경제계획은 산업부문에서 102.5%로 초과 달성되었지만 실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독립채산제가 정확히 실시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가저하와 생산품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향상이 부족하여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지장을 주었다. 도급제가 정확히 실시되지 못하고 설비능률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였다. 지방적 원료원천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조직이 불충분하여 생필품 생산을 증가시키지 못하였다.⁸⁵⁾

1948년 인민경제계획의 과제는 1947년 계획의 실행 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 1948년에는 공업생산액의 급속한 성장을 보장하면서 특히 기계·기구·부품·생필품의 생산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원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다.

1948년 인민경제계획은 공업총생산액을 1947년에 비해 141% 제고시킬

83)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III, 88~107, 116~124쪽.

8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46. 9~1951. 11, 당중앙위원회)』, 58~61쪽.

85)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 『北朝鮮人民會議 第四次 會議 會議錄』(평양: 朝鮮人民出版社, 1948), 16~17쪽.

것을 예정하였다. 경제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노력조직을 개선하고 도급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노동규율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노동생산능률을 1947년에 비해 47% 향상시킬 것이 계획되었다. 공장·기업소에서 독립채산제와 계획적인 관리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상품원가를 1947년에 비해 25~60% 저하시켜 기업소들의 채산성을 증대시킬 것이 예견되었다.⁸⁶⁾

북조선로동당은 경제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해 직장·작업반·개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매월 매일 매교대 계획량을 기한 내에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기적인 생산돌격운동을 철폐하고 중산경쟁을 생산의 높은 수준에서 낙후한 부문을 끌어올리는 정상적 조직으로 전개할 것과 생산의 합리적 편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노력의 기계화를 적극 장려하고 생산 및 노력조직을 과학적으로 개편할 것도 요청하였다.⁸⁷⁾

1947년 인민경제계획은 기업소들의 생산조직이 확고한 토대에 서있지 못하고 과거에 계획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획화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예정숫자에 포함된 계획지표들은 주로 양적 지표에 국한되었고 노동생산능률에 관한 지표 외에 질적 지표는 거의 도입되지 못하였다. 또한 예정숫자에 포함된 계획지표들은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못하고 경험적인 통계숫자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계획화 수준의 미숙성으로 1947년 계획은 완전한 의미에서 연간계획으로 되지 못하고 예정숫자로 되었던 것이다.⁸⁸⁾

1948년에는 계획화 수준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 첫째, 1948년에는 1947년의 인민경제발전에 관한 예정숫자로부터 국가 법령으로서 연간계획

86) 위의 책, 20~21쪽.

8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46. 9~1951. 11, 당중앙위원회)』, 58~61쪽.

88)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인민경제의 발전』, 24~25쪽.

으로 이행하였다. 둘째, 1948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원가저하에 관한 계획 지표가 도입되었다. 셋째, 1948년의 모든 계획지표들은 1947년과 같이 경험적인 통계숫자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미숙한 정도에서나마 일정한 기준량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일련의 원료 및 연료 소비 기준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⁸⁹⁾

1947~48년 인민경제계획에서는 국영공업의 복구발전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국가예산이 지출되었다. 1947년에 국영공업의 복구에 사용된 자금은 11억4,200만 원에 달하였다. 이 자금은 산업국 산하 국영 기업소의 대보수, 복구, 확장, 유지 혹은 탐광에 투여되었다. 1948년에는 1947년에 비해 196% 증대된 22억3,600만 원이 국영공업에 지출되었다. 국영공업에 대한 지출을 공업 부문별로 보면 석탄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광공업, 흑색금속공업 등에 비교적 많은 자금이 투여되었다.⁹⁰⁾

1947~48년 시기 국영공업에 대한 지출은 인민경제지출의 42.9%에, 국가예산지출의 13.5%에 달하였다. 국영공업에 대한 지출은 부분적으로는 공업 기업소들의 자체지출에 의거했지만, 주요하게는 국가지출에 의존하였다. 이 시기 국영공업에 대한 지출에서 국가지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68.6%에 달하였다.⁹¹⁾

1947~48년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지만, 계획완수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은 소련에 납입된 북한 상품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련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연료·원료·기술자재가 제때에 공급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측은 소련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모든 상품을 경제계획의 완수를 위한 물질적 담보로 간주하였지만, 소련으로서 전후 인민경제 복구를 수행해야 하는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었기

89) 위의 책, 29쪽.

9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북한경제통계자료집』, 238쪽;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7쪽.

91) 위의 책, 238쪽 참조

때문에 북한 공업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혈액공급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⁹²⁾

북한 공업의 재정상황도 경제계획의 완수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공업 기업소들에 대한 재정지출이 만족스럽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계획에 의해 복구된 생산설비의 가동이 지체되곤 하였다. 납품자와 주문자 사이의 상호결재가 원활히 조직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소마다 막대한 양의 재고품이 누적되어 기업소의 재정상황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⁹³⁾

이러한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1947~48년 공업총생산액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표 3>과 <표 4>는 1946~48년 시기 공업부문별 생산액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 공업발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매우 높은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시기 공업총생산액은 그 절대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였다. 공업총생산액은 194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47년에 189.3%, 1948년에 256.4% 성장하였고, 이 시기 공업총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52.1%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발전 속도는 경제복구기의 일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복구기에 있어서는 생산 장성이 기업소의 신설에 의한 것보다는 기업소의 복구·개선·확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기업소의 복구·개선·확장은 비교적 단기간에 적은 투자로서 실현된다. 이리하여 일반적으로 경제복구기의 생산 성장 속도는 경제개건기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⁹⁴⁾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계제작공업·흑색금속공업·건재공업 부문의 생산고는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것은 이 부문들이 다른 부문들에 비해 설비, 부품, 금속, 시멘트의 공급에 비교적 덜

92)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19, 목록 560, 문서철 8, 12~13쪽.

93)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3, 문서함 4, 문서철 10, 51쪽.

94)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72쪽.

<표 3> 1944~48년 공업부문별 총생산액(단위: 백만 원)

공업부문	1944년	1946년	1947년	1948년
전력공업	729.28	353.34	527.72	611.74
	725.86	349.57	*500.65	525.97
	3.42	3.77	27.07	85.77
석탄공업	1,751.10	459.24	996.66	1,282.19
광공업	2,397.14	654.47	1,225.92	1,660.65
금속공업	6,867.46	952.97	2,235.34	3,057.81
흑색금속공업	3,831.11	356.17	1,005.18	1,728.60
유색금속공업	3,036.35	596.70	1,230.16	1,329.21
기계제작공업	468.99	87.57	354.72	604.00
화학공업	3,741.07	1,074.19	1,532.13	2,109.18
경공업	2,943.61	1,428.20	2,479.09	3,389.97
건재공업	654.57	88.38	270.33	357.81
합계	19,553.22	5,098.36	9,651.92	13,073.35

출전: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233쪽.

위 통계는 1948년 가격으로 환산된 것이다. 통계숫자는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일정한 결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공업발전의 전체적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용하다.

의존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광공업 생산고는 공업 부문들 가운데 가장 느리게 성장하였는데, 이것은 퇴각시 일본인들에 의한 지질문헌의 파괴와 탐사작업의 중단에 따른 것이다. 전력공업의 성장 속도가 비교적 저조하였던 것은 발전소들의 복구가 이미 1945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⁹⁵⁾

위에서 인용한 공업발전 통계에도 불구하고, 1946~48년 시기 북한 공업은 여전히 해방 전의 수준, 즉 1944년의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48년에 기계제작공업과 경공업 생산고만이 1944년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을 뿐, 나머지 공업 부문들은 이 시기 전체

95)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8쪽.

<표 4> 1944~48년 공업부문별 총생산액 성장률(단위: %)

공업부문	1944년	1946년	1947년	1946년/1948년	1947년/1944년	1948년/1944년
전력공업	100	149.3	173.1	48.4	72.4	83.9
전력	100	144.2	150.5	48.1	69.0	72.5
전기부품	100	638.5	2275.1	110.2	791.5	2507.9
석탄공업	100	217.0	279.2	26.2	56.9	73.2
광공업	100	187.3	253.7	27.3	51.1	69.3
금속공업	100	234.6	320.9	13.9	32.5	44.5
흑색금속공업	100	282.2	485.3	9.3	26.2	45.1
유색금속공업	100	206.2	222.8	19.6	40.5	43.8
기계제작공업	100	405.1	689.7	18.7	75.6	128.8
화학공업	100	142.6	196.3	28.7	40.9	56.4
경공업	100	173.6	237.3	48.5	84.2	115.2
건설공업	100	305.9	404.8	13.5	41.3	54.7
합계	100	189.3	256.4	26.1	49.4	66.9

출전: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합 14, 문서철 47, 233쪽.

에 걸쳐 해방 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1946년, 1947년, 1948년 공업총생산액은 각각 1944년의 26.1%, 49.4%, 66.9%에 달하였다.

이 시기 북한 공업이 해방 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은 일련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첫째, 공업설비가 철저히 마모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쟁 시기 일본인들은 공업설비의 수리작업을 전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방 직후 공업설비의 마모율은 40%에 달하였다. 둘째, 부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업설비의 훼손이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력발전, 화학공업, 제지공업 부문들에서 특히 심하였다. 셋째, 숙련노동자들과 기사·기술자들의 격심한 부족도 공업 발전을 가로막았다.

조선의 공업은 일본제국주의 중심부 공업의 부속물로서 자체 생산 제품의 상당 부분을 반제품의 형태로 일본으로 수출해 왔다. 일제 패망 이후 중심부와 경제적 연계가 단절된 북한 공업은 제품의 판로가 차단되었다. 이 때문에 몇몇 공업 부문들에서 생산능력을 전면 가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판매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남북분단과 남북한간 교역의 축소도 북한의 원료와 공산품의 판로를 현저히 축소시켰다. 이러한 사정이 공업 생산능력의 해방 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억제한 것이다.⁹⁶⁾

공업 생산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함께 사회주의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강화되었다. 이것은 물론 ‘국영부문이 지배적 세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이다.⁹⁷⁾ <표 5>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1946~48년 시기 사회주의적 부문은 공업총생산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로 산업국의 관할 하에 있는 국영공업의 발전에 의한 것이지만, 지방국영공업과 협동조합공업의 발전도 사회주의적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지방국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업국 내에 지방공업부가 창설되고 이에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가 일임되었다. 1947년 말에는 생산협동조합들도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극에 힘입어 지방공업과 협동조합공업의 생산고는 1947년에 1억8,400만 원에 달하였다.⁹⁸⁾

이와는 반대로 공업총생산액에서 사적자본주의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46~48년 시기 공업총생산액에서 개인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 이상 감소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개인공업 자체의 절대적 생산량은 일정한 한도에서 계속 성장하였지만, 개인공업의 성장률은 국영·협동조합공업의 성장률에 비해 매

96)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19, 목록 560, 문서철 8, 7~8쪽.

97)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327~328쪽.

98)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72~173쪽.

<표 5> 1946~48년 공업총생산액의 소유형태별 비중(단위: %)

공업부문	1946년	1947년	1948년
국영 및 협동조합 공업	72.4	88.1	87.9
개인공업	27.6	11.9	12.1
합계	100.0	100.0	100.0

출전: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72~173쪽.

우 낮았다.

이 점은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자료가 잘 입증해 준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46~48년 시기 공업총생산액의 성장률은 194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47년에 154%, 1948년에 218%에 달하였다. 같은 시기 국영·협동조합공업의 성장률은 1947년에 170%, 1948년에 256%였고, 개인공업의 성장률은 1947년에 110%, 1948년에 117%였다.⁹⁹⁾ 이처럼 개인공업의 성장률은 전체 공업은 물론 국영·협동조합공업의 성장률 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

공업의 부문별 구성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표 6>은 공업 부문별 생산고의 성장 속도와 이에 따른 부문별 구성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공업 부문에서는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의 비중이 제고되었다. 특히 기계제작공업의 경우 공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4년 2.4%에서 1948년 4.4%로 2배 가까이 제고되었다.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부문의 비중도 급속히 제고되었다. 이와 반대로 채광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재공업의 비중은 감소되었다.

공업의 부문별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전체 공업 부문을 통하여 과거에

99)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113쪽.

<표 6> 공업부문별 구조의 통태

공업부문	1944년	1946년	1947년	1948년
전력공업	3.7	6.9	5.5	4.7
석탄공업	9.0	9.0	10.3	9.8
채광공업	12.3	12.8	13.0	11.9
흑색금속공업	19.6	7.0	10.4	14.7
유색금속공업	15.5	11.7	12.8	11.5
기계제작공업	2.4	1.7	3.7	4.4
화학공업	19.1	21.1	15.9	17.3
건재공업	3.3	1.8	2.8	3.0
경공업	15.1	28.0	25.6	2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전 :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인민경제의 발전』, 139쪽.

생산하지 못하던 새로운 생산물이 생산물 구조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공업 부문 내부에 있어서도 원료, 반제품, 완제품 생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7>은 공업부문별 생산 구조(<표 6>)를 생산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생산부문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 7>은 질적 측면에서 공업 발전의 주요 경향, 즉 중공업과 경공업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산수단 생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1944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였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수단 생산 가운데 고정фон드의 물질적 요소로 되는 생산수단 생산의 비중이 급속히 제고되었다. 이에 반해 소비재 생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1944년의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였다.

<표 7> 생산부문별 생산고 비중(단위: %)

공업부문	1944년	1946년	1947년	1948년
생산수단 생산 부문	84.9	72.0	74.4	77.3
소비재 생산 부문	15.1	28.0	25.6	2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전: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인민경제의 발전』, 139쪽.

이처럼 경공업의 우선적인 발전을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적 기초인 중공업의 복구발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발전전략이 공업발전의 주요경향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1948년 1월 20일 김일성은 나라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향에서 인민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제기하면서 중공업과 경공업의 상호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부터 중공업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그릇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공업부문에 있어서 인민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부터 대량 제조 생산하여 인민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또는 이 조건 위에서 점차적으로 국가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며 확대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먼저 있는 중공업 공장들을 돌리며 중공업 생산품으로 우리의 기초를 닦는 일방 또 한 방면으로는 외국과 무역을 하여 생산필수품을 수입하며 또 중공업 발전의 자재를 수입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업기초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중공업만 본위하고 인민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다면 생활조차 안정되지 못한 인민들이 무슨 중공업 본위의 경제건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실제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부터—이것이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¹⁰⁰⁾

경공업의 우선적 발전전략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공업은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경공업 기업소들의 대다수가 남한의 농업지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공업은 해방 이전에는 물론 이후에도 매우 협소한 범위의 상품만을, 그것도 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상품만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상품들조차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해마다 많은 양의 생필품을 수입해야 했다.¹⁰¹⁾

자명한 사실이지만, 북한 공업의 발전은 소련 경제의 이해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었다. 1947년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메레츠코프는 “북한의 공업은 우리에게(소련에-필자) 이로운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⁰²⁾ 쉬피코프의 평가에 의하면, “1947년도 계획은 소련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조선의 국내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복구시킬 것을 예정하였다.”¹⁰³⁾

1948년 인민경제계획의 수행과 관련하여 동년 3월 5일 소련의무상 몰로토프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쉬피코프는 북한에 유용광물이 매우 풍부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 공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련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특히 극동의 우리(소련-필자) 공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조선 공업의 일련의 부문들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소련의-필자)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를 심의해야 할 것이다.”¹⁰⁴⁾

100)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I(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19~20쪽.

101)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3쪽.

102) 『쉬피코프일기』, 1946. 12. 18.

103)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19, 목록 560, 문서철 8, 7쪽.

104) 러시아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19, 목록 560, 문서철 8, 8쪽.

북한 상품의 소련 수출액이 공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6년에 30.1%, 1947년에 29.8%, 1948년에 35.9%에 달하였다. 공업총생산액에서 거의 전적으로 북한 자체의 국내 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한 전력공업·기계제작공업·경공업의 생산액을 제외하면, 공업총생산액에서 소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6년에 47.5%, 1947년에 45.7%, 1948년에 55.5%에 달한다. 이처럼 북한의 공업, 특히 중공업은 상당 정도 소련 경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다.¹⁰⁵⁾

1946년에는 적지 않은 기업소들이 작업을 개시하였지만 기업소들의 작업은 전면적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비교적 덜 파괴되고 원료·연료·설비·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기업소의 개별 부문·집합기계·분공장 단위로 단계적으로 조업이 복구되었다. 1947~48년 복구과정이 지속되면서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1947~48년은 ‘생산능력의 회복기’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계제작공업, 경공업, 화학공업,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같이 국내시장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들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생산력이 회복되었다. 특히 기계제작공업은 이미 일제시기의 수준을 능가하였다. 광공업, 유색금속공업, 흑색금속공업, 건재공업과 같이 과거에 그 제품을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던 공업 부문들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생산력이 회복되었다. 특히 코크스용석탄, 보오크사이트 등 수입원료에 의존하여 생산활동을 해 온 흑색·유색금속공업은 매우 더딘 속도로 회복되었다.¹⁰⁶⁾

북한 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서 총생산고의 증가와 함께 산

105)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경제개혁, 1945~1948”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181쪽.

106) 러시아대의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6~18쪽.

업구조의 개편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구조 개편의 목적은 민족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수입 의존성을 타파하고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현대적이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기계·설비·자재 등 인민경제의 수요와 주민의 생필품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1947~4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1947~48년 시기는 '산업구조 개편의 출발기'였던 것이다.

산업구조 개편 작업은 특히 국내수요의 자체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무엇보다도 먼저 단순하지만 부족한 상품의 수입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축소하는 것에 전체 과정의 특징이 반영되었다. 재편성 작업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자연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최단 기한 내에 최소의 노력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생산의 양적 팽창을 도모하고, 민족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며, 일본인들에 의해 조성된 경제의 불균형 상태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달성할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공장과 생산설비가 습득되어 가동에 들어갔다. 많은 집합기계들이 새로운 형태의 연료와 원료에 적용시키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며 제품 종류를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조되었다. 1948년 말 현재 가동중인 공장들의 생산력은 많은 경우 일제시대에 도달한 수준을 상회하였다. 새로 건설되거나 개조된 설비들에 의해 이전에는 전혀 생산할 수 없었던 신상품이 출하되었다. 1947년에 생산된 신상품의 종류는 70여 개를 기록하였고, 1948년에는 150개까지 계획되었다.

기술제도와 생산조직의 개선을 위한 작업도 전개되었다. 일제시기에 통용된 기술자들의 경험에 의거해 수립된 기술공정은 정확한 계산에 따른 기술공정으로 변화해 갔다. 생산공정에서 원료, 연료, 전기, 기본자재와 보조자재의 소비기준이 책정되었고, 금속공업의 주요 생산공정에 21개의 세부

적인 기술규칙이 도입되었다. 다른 공업 부문들에서도 기술규칙이 작성되었다. 1948년 9월 제품의 질적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당히 엄격한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를 확립한 표준 목록이 출간되었다.¹⁰⁷⁾

VI. 맺음말

해방 직후 북한의 공업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적지 않은 기업소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북한의 공업은 그 자체로서 식민지적 편파성이 커서 원료·자재·설비의 수입의존도가 심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의 공업은 식민지 본국과 연계가 단절되었다.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거의 모든 일본인 기술자들·경제관리들이 북한에서 도주하였다. 조선인 공업간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에는 독자적인 공업관리기구도 없었다.

해방 직후 대다수 기업소들이 생산활동을 중지하였다. 1945년 10월 현재 전체 공업의 60% 정도가 휴지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원료와 노동력이 공급된다면 이들 휴지 기업소들의 업무 재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될 수 있었다. 공업 기업소들의 기술적인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소군정은 '북조선인민정권'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공업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중앙관리기구로서 산업국이 창설되고 그 밑에 공업 부문별 관리기구들이 조직되었다. 소군정은 공업관리에 직접 개입하여 군수공업과 중공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전담할 산업고문관을 임명하였다.

공업을 복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107)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65~73쪽.

외부로부터 수입해 온 원료·자재·설비의 심각한 부족이었다. 이 상품들을 남한을 포함한 '자유세계'로부터 수입해 올 가능성은 차단되었다. 소련 정부는 원료·자재·설비를 공급해 줄 것을 호소하는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소군정의 공업정책도 공업의 복구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를 조성하였다. 소련 정부는 일제 소유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을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였고 북한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을 소련경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활용하려 했다.

소련 정부는 최단기간 내에 북한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소들의 생산력을 총가동하여 그 생산물을 소련으로 반출해 갈 것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다. 이와 동시에 현지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가동되지 못하는 비교적 발전되고 현대적인 기업소들에서 공업설비를 철거하여 소련으로 반출해 갔다.

소군정의 공업정책은 북한 주민들, 특히 경제엘리트들 사이에서 소련의 대북한정책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주민들의 반소정서를 무마하기 위해 소련 정부는 기존의 공업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일제 소유의 공업·운수·체신·은행 등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이관하였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주요 부문에 대한 국유화로 귀결되었다. 산업국유화 결과 국가적 경제형태는 공업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국유화 이후 공업부문들의 일체 활동은 산업국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공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화 기구체계가 조직되었고, 국영 기업소들에는 유일관리제와 독립채산제의 일정 요소들이 도입되었다.

1947~48년 북한 공업의 일체 활동은 단일한 인민경제계획 하에 수행되었다. 인민경제계획의 기본방향은 군수공업을 평화산업으로 개편하고, 경공업과 생필품공업을 신속히 발전시키며, 현지 원료·연료에 입각하여 공업의 기술적 토대를 전환시키고, 기계제작공업을 광범하게 발전시키며, 채

광공업·중공업을 복구발전시켜 생산물의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놓여 있었다.

1947~48년 북한 공업 총생산고의 성장속도는 비상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공업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1944년 수준을 회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설비·원료·부품의 공급 지체, 기술간부의 결핍, 생산물 수출 가능성의 제한 등에 기인한 것이다.

‘북조선인민정권’은 경제정책에서 국가부문이 인민경제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국가경제의 기초로서 중공업의 우선적인 장성을 보장하면서 인민대중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경공업의 발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 공업의 발전에는 자신의 국가적 이해를 추구한 소련의 이해가 일정 정도 반영되었다.

참고문헌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문서군 5446(소련각료회의), 5283(전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러시아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주북한소련민정청, 25군, 142(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비서부), 379(25군 정치부), 19.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6(몰로토프 외무상 비서부), 07(비선스키 외무부상 비서부), 013(로조프스키 외무부상 비서부), 018(말리크 외무부상 비서부), 0102(조선에 대한 보고부), 0480(주북한소련민정청).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문서군 17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정

보국).

『쉬띠꼬프일기』

『그라프초프문서』

에스·엘·찌흐빈스키 외 편, 『소련과 인민조선의 관계. 문서와 자료 1945~1980』 (모스크바: 과학출판사, 1981).

유·웨·와닌 외 편, 『조선해방』 (모스크바: 동양문헌출판사, 1976).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_____, 『인민경제의 발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4).

_____, 『해방 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V, VIII.

김기석 편, 『북조선의 현상과 장래』 (서울: 조선정경연구소, 1947).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I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평양: 국립출판사, 1958).

박영근, 『우리나라에서의 공업관리조직형태의 개선강화』 (평양: 1961).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 『北朝鮮人民會議 第二次 會議 會議錄』 (평양: 朝鮮人民出版社, 1948).

_____, 『北朝鮮人民會議 第四次 會議 會議錄』 (평양: 朝鮮人民出版社, 1948).

北朝鮮中央民戰書記局, 『民主建國에 있어서 北朝鮮民戰의 役割』 (평양: 조선출판사, 1947).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손전후, 『산업국유화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기관지 『正路』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46.9-1951.11, 당중앙위원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북한경제통계자료집』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4).

『혁명신문』, 1945년 10월 4일.

Paik, Hak Soon,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東京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東京: 巖南堂書店, 1964).

ЧЖОН ХИОН СУ,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ПЕРВЫЕ ГОДЫ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1945-1948 гг.).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М.В.ЛОМОНОСОВА. Институт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Москва, 1997.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경제개혁, 1945~1948”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대학 역사학 박사학위논문, 1997).

(Abstract)

The Nationalization of Major Industry and Planning of People's Economy

Jeon Hyun Soo (Government Archive & Records Service, History)

This paper explores the nationalization of major industry and the economic planning of the people during the post-liberation era.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dustrial policies instituted by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Following liberation, the industry of North Korea was on the verge of serious crisis with a high rate of dependence on imports of materials, resources, and equipment. As of October 1945, approximately 60 percent of whole industries were coming to a standstill.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took steps to normalize North Korean production under close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They directly intervened in industrial management and appointed industrial consultants who wer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ontrolling military and heavy industry.

Industrial policies of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caused suspicions of

their real intent, especially from the North Korean elite. To soothe their anti-Soviet sentiment, the Soviet government completely changed their industrial policy and transferred industr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banks previously owned by the Japanese to North Koreans.

Since nationalization, all activities of the industrial section wer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Office Industry. An organization system for planning was established. In national enterprises, unique managing system and independent profit system were introduced.

From 1947 to 1948, all activities of North Korea's industry were accomplished under the one and only People's Economic Plan. Basic direction of the People's Economic Plan included a changeover from a military industry into peacetime industry and light industry and necessities of life were rapidly developed. The growth rate of total industrial output of North Korea was highly maintained. However, the entire industry of North Korea could not recover to the same level as in 1944.

In the economic policy, the People's Republic concentrated on nationalization of the economy. They guaranteed heavy industry first and made all possible efforts to develop light industry in order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Key Words: North Korea, Industry, Nationalization, Planning People's-Economy.